



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**체장장애 등록 시행 관련 협조 요청(의료기관 목록 제출)**

1.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귀 학회 협조에 감사합니다.
2. **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**하는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,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및 「장애정도판정기준」 고시 개정안에 따라 **체장장애인 등록이 가능**해집니다.
 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장애유형별로 정해진 진료과목의 전문의로부터 장애 진단을 받아야 하는바, 위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체장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의사는 내과(내분비대사분과) 전문의 또는 소아청소년과(내분비분과) 전문의로 한정됩니다.
3. 체장장애 등록 신청인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**체장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의료기관 목록**을 환우회 및 지자체 등에 공유하고자 하니, 해당 전문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붙임 양식에 따라 **2026년 3월 23일(월)까지 제출**해 주시기 바랍니다.
4. 아울러 '체장장애 진단 및 등록 방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'을 3월 내에 배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의료기관 명단(양식). 끝.



수신자 대한내분비학회장, 대한소아내분비학회장

민간전문가	이순향	행정사무관	두유림	장애인정책과장	박문수	전결 2026. 3. 16.
협조자						
시행	장애인정책과-1943	(2026.03.16)		접수		
우	30116	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(어진동) 보건복지부 별관 10층				/ http://www.mohw.go.kr
전화번호	044-202-3290	팩스번호	044-202-3960	/ hyang2025@korea.kr		/ 비공개(5)